

#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정 2011. 11. 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05호  
개정 2014. 10.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0호  
개정 2019. 08. 1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327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임원 등 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발원의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제외)
2. 부서장(1~3급 직원 중 TF팀장을 포함한 보직자)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당사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3조(청렴의무)** 계약당사자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14.10.17>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개발원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7.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 업무지시, 갑질행위, 직장내 괴롭힘 <신설 2019.8.14.>
8. 직무관련 영리행위 <신설 2019.8.14.>
9.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신설 2019.8.14.>
10.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사적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신설 2019.8.14.>

### 제3장 청렴계약의 운영

- 제4조(청렴계약 체결)** ① 계약당사자와 개발원은 각각 청렴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청렴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의 체결은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직무청렴계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 직무청렴계약서에 각각 상호 서명·날인하고 부서장은 원장과 별지제1호 서식의 부서장 직무청렴계약서에 각각 상호 서명·날인함으로써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단,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에서 청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체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7>

### 제4장 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 제5조(신고의무)** 계약당사자는 제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개발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 제6조(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① 제5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개발원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계약당사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계약당사자 직무청렴계약서 상의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개정 2014.10.17>

- 제7조(의견진술)** 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계약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계약

당사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당사자는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재심 청구)** ① 제재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한다.

③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재심 이전의 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 제5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9조(제재종류)** 이사회는 청렴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병과할 수 있다.

1. 포상취소 : 계약당사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2. 성과급 지급중지 등 :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지 또는 지급 취소 및 환수한다.
3. 해임건의 : 해임을 건의한다. <개정 2014.10.17>

**제10조(제재수준)** ① 이사회는 제9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1. 개발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개발원의 이익 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②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가. 계약당사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다. 해임건의

## 2. 벌금형 확정 시

가. 계약당사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일부의 지급중지, 지급 취소 및 환수 등의 제재

③ 제재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결과를 따른다. <개정 2014.10.17>

**제11조(제재집행)**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제12조(퇴직후 제재)** 계약당사자가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개정 2014.10.17>

**제13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8.14.>

**제14조(손해배상 청구)**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장 기 타

**제15조(이사회 보고 등)** 감사담당 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직무청렴계약제 운영현황, 실적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개발원에 재직 중인 임원은 지체 없이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 부 칙 <2014.10.17>

제1항(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8.14.>

제1항(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14.10.17>

## 직무청렴계약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부서장) ○ ○ ○(성명)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며,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원의 임원 직무청렴계약규정을 확인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 비상임 이사(원장) ○ ○ ○와 상호 합의하에 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직무청렴계약 이행의무 대상자

확인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부서장)    ○      ○      ○

선임비상임이사(원장)    ○      ○      ○

(서명)

(서명)